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활동지원인력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활동지원급여 비용 청구 개선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체계 정비〉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66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활동지원인력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3
2. 실태조사 및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6
3.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지급 체계 개선	11
4.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15
5. 부칙	21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7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나.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 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국가는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4)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6)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활동지원인력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국가)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지방자치단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최근 활동지원사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사는 2020년 84,854명에서 2025년 126,308명으로 약 48.9% 증가하였으며,

활동지원기관은 2020년 952개소에서 2025년 1,146개소로 약 20.4% 늘어났고,

국비 예산은 2020년 1조 3,014억원에서 2025년 2조 5,323억원으로 약 94.6% 확대됨.

이처럼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예산 등 활동지원사업 관련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인력 처우 및 제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활동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활동지원사(명)	84,854	95,046	103,378	112,570	121,661	126,308
활동지원기관(개소)	952	1,002	1,027	1,076	1,125	1,146
예산(국비, 억원)	13,014	15,216	17,425	19,918	22,846	25,323

주1): 2025년은 6월 기준이며,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 70%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함) 제3조1)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 적절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②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③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활동지원급여²⁾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

-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인 등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³⁾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임(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 마련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경제적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여건 마련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력 의무’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 이행이 담보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 차이에 따라 적정 인건비 기준 적용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행 확보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제도의 특성상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 단가로 편성되므로 별도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도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활동지원급여의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및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 개정안은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생략)	제3조의2(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의3(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관리방안
	3.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현행	개정안
	<u>사항</u>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장애인활동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활동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② 수급자의 규모,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③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④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⁴⁾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장애실태조사’에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실태조사가 장애인 관련 대부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의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임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과 예산의 중복을 피하려는 실무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독립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격, 급여 수준과 만족도, 활동지원기관 운영, 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 활동지원사업 고유의 세부적·전문적 영역을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할 경우,

①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가 중복되어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② 현행 「장애인활동법」 제3조의2제2항⁵⁾이 2024년 12월에 신설된 이후 아직까지 장애실태조사에 적용된 사례⁶⁾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항 삭제 필요성에 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2: 2023년 장애실태조사 중 활동지원사업 관련 조사 내용).

- 한편, 개정안에서는 5년 단위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과 매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5) 「장애인활동법」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장애실태조사는 2023년이며, 차기 조사는 2026년 예정임.

이는 활동지원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⁷⁾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 ~ 2027년)에는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단가 인상, 보전급여 제도 개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기관 선택권 강화 등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한 과제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내용).

□ 따라서 활동지원사업에 한정해 별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경우,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체계와의 중복 및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력이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별도 계획 수립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장애인실태조사에 이미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 병행이 바람직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계획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지급 체계 개선

-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활동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도록 하고, 급여비용 산정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u>청구하고</u>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u>지급하여야</u> 한다.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 ----- ----- ----- ----- <u>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구분하여 지급하여야-</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u>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u>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 ----- <u>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지원등급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법령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참고자료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에서는 급여를 제공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비용을 지급함.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포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며, 급여비용 산정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국가에서 마련한 적정 인건비를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활동지원사업은 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산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아님.

- 유사한 구조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이 있으나, 적정 인건비 기준 또는 인건비 지급 권장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① 인건비와 운영비의 세부 항목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회계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활동지원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 이를 검증·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및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고정될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필요에 따라 각 비용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인력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건비·운영비 분리 관련 규정은 전체 바우처 사업체계 내 형평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 개정안은 ①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를 명시하고, ②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3조 제4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1. <u>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u> 2. <u>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u>

현행	개정안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 ⑤ (생략)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u>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 -----제6호부터 제9호까지----- ----- -----

현행	개정안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재무·회계 기준 위반 및 인건비의 목적 외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업무정지·지정취소·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과 임금 유용 방지, 급여비용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은 현행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다만, 개정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사유(안 제23조의2제1호·제2호·제3호), 지정취소 등 사유(안 제24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과징금 부과 사유(제24조의2제1항)로 중복 규정하고 있음.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 개정안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 비교 >

시정명령 (안 제23조의2제1호·제2호·제3호)	지정취소 등 (안 제24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과징금 (제24조의2제1항)
-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처럼 동일한 위반 행위가 각각 중복 규정되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시정명령은 법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같은 제재처분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⁹⁾

개정안에서와 같이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과징금 처분의 사유가 동일할 경우, 처벌에 앞서 개선을 유도하는 시정명령의 기능이 약화되고,

제재처분 간 구분이 모호해지므로, 집행 과정에서 선택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제재처분의 일관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 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제재 사유를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거나 규정 간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¹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다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적정 인건비 비율 준수 규정은 없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과 제공인력 간 관계는 민간 근로계약 관계로서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및 위반 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활동법」에 별도의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청구·지급 체계 개선,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 활동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다수의 사항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과 지침 개정에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도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바우처 제도의 특성상 단가의 구성요소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규정은 형평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전체 바우처 사업 체계에서 검토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단가에 반영되도록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물가상승율, 최저임금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음.

* 사업부처와 재정당국 간 협의에 따라 정부안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

□ (장애인활동지원 실태조사 구분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이미 활동지원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음.

* 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규모, ② 이용자 만족도 수준, ③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주보호자(장애인 활동지원사 포함), ④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위반 시 제재규정)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민간의 근로 계약관계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며,

위반 시 이에 따라 처벌되는 등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므로, 「장애인활동법」에서 별도의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기획재정부

-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중으로, 별도 규정 실익 적음.
- (장애인활동지원 실태조사 구분 실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에 활동지원 관련 항목 포함, 별도 조사 실시 불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활동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별도 규정 실익 적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 최소 약 60시간(1,000천원) ~ 최대 약 480시간(7,980천원)
 -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2025년 기준)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7,980천원 (약 480시간)	7,481천원 (약 450시간)	6,983천원 (약 420시간)	6,485천원 (약 390시간)	5,986천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488천원 (약 330시간)	4,986천원 (약 300시간)	4,489천원 (약 270시간)	3,991천원 (약 240시간)	3,492천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994천원 (약 180시간)	2,495천원 (약 150시간)	1,997천원 (약 120시간)	1,499천원 (약 90시간)	1,000천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1.4천원 ~ 209.2천원)				
특별 지원 급여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35천원~1,332천원(약 20~80시간) 최대 6개월				
	본인 부담	면제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구 분	대상자 (A)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합계	
		이용 자(B)	이용 률 (C) (C=B/A)	이용 자(D)	이용 률 (E) (E=D/A)	이용 자(F)	이용 률 (G) (G=F/A)	이용 자(H)	이용 률 (I) (I=H/A)
2020	118,125	99,784	84.5%	2,375	2.0%	241	0.2%	102,400	86.7%
2021	130,160	109,010	83.8%	2,714	2.1%	237	0.2%	111,961	86.0%
2022	142,159	117,894	82.9%	2,869	2.0%	230	0.2%	120,993	85.1%
2023	155,602	128,478	82.6%	2,987	1.9%	263	0.2%	131,728	84.7%
2024	167,403	138,332	82.6%	3,127	1.9%	296	0.2%	141,755	84.7%
"25.1~6	168,696	139,418	82.6%	2,831	1.7%	258	0.2%	142,507	84.5%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6,620원/시간('25년 기준)

- 예산 : ('24) 22,846억원(12.4만명) → ('25) 25,323억원(+2,477억원 증, 13.3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2023년 장애실태조사 중 활동지원사업 관련 조사 내용〉

□ 장애실태조사 중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내용

- ①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규모, ②이용자 만족도 수준, ③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주보호자(장애인 활동지원사 포함), ④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조사 결과 요약(2023년 조사)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규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금까지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5.7%로 15.0만명(150,671명)으로 추정됨.
- 현재(2022.9.-2023.8.)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4.8%로 12.5만 명(125,934명)으로 추정됨.

(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수준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는, 만족하는 경우가 87.6%(매우만족 41.4%, 만족 46.2%)이며, 불만족하는 경우는 12.4%(약간 불만족 10.5%, 매우 불만족 1.9%) 수준임.

(3)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주보호자(장애인 활동지원사 포함)

-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지원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경우는 4.7%임.

(4)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 현재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의 주된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이 부족해서’(30.3%), ‘활동지원사의 업무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함’(1.2%) 등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내용〉

1.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지속 확대

* 대상자 : ('11년) 1급 → ('13년) 2급 → ('15.6월) 3급 → ('19.7월)

전체 장애인 수급자 : '12년 5.0만 → '18년 9.4만 → '20년 11.5만 → '21년 12.7만 → '22년 8월 13.5만

월 최대 지원시간 : '11년 183 → '13년 360 → '16년 392 → '19년 441 → '19년 480

☐ 개선 필요사항

-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필요

* 등록장애인(264만명) 대비 활동지원 수급자(12.7만명) 비율(4.8%)이 낮고, 수급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은 약 86%('22.8월 기준)에 불과

- 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개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이용 지원 및 선택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

* (예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 및 이용률 저하 문제, 의료·긴급응급지원 등 신규서비스 제공 미흡, 조기노화·고령 발달장애인 맞춤형 낮활동서비스 개발 필요 등

2. 추진 과제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돌봄·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지속 확대 추진(연 8천명 규모)

- 서비스 단가 5.2% 인상(14,800→15,570원/시간당) 및 대상자 1만명 확대, 가산급여 단가 인상(2천→3천원) 및 대상자 2천명 확대('23)

- 안정적 제공인력 수급*을 위해 최근 단가 인상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본단가 지속 인상 추진

* 최종증 장애인 매칭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활동지원 이수 교육 일부 추가 감면(현 8시간 감면) 등 검토

-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가산급여 단가 및 대상 지속 확대

- 보전급여 등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는 7,484명, 이 중 보전급여 이용자는 727명('22.8)

* 장기요양 급여전환 및 보전급여 신청 안내 절차 강화하여 보전급여 이용자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 체계 내에서 사각지대 해소 추진('23)

○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 활동지원 수급자, 1인·고령 장애인 가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23)

-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24시간 활동지원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23)

- 활동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급자의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23)

* 시범사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관 연계 확대 운영방안 마련('24)

- 취약가구·시간·대상·지역 등을 고려한 AI, 야간순회 방문 등 신규서비스 개발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24)

- 도서지역·감염병 사유 외 취약가구(독거, 다장애가구), 시간(심야), 대상(희귀질환 등)을 고려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방안 검토

* 코로나19로 한시 허용 중인 발달장애인 대상 가족 급여('22.8월 440명) 모니터링 병행

- 활동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등 도입 추진('25)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결과, 서비스 현황 등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일 최대 8시간 초과 시 ① 적용)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가산수당은 최종증 수급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추가로 지급

2. 방문목욕(※ 주 1회 원칙)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6,4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7,970원

3. 방문간호(※ 주 3회 원칙)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30분 미만	41,71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원
③ 60분 이상	62,930원